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광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원광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3년 4월 21일

학교법인 원광학원

감 사 손 인

감 사 이 경

감 사 장 원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0591호)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원광대학교 총장

성명 박 성 태

(사학기관 감사업무 처리유의사항 별지 제1의2호 서식)

원광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해당사항 없음	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	
피감사기관장	원광대학교 총장 박 성 태 직인 (서명)

(교비회계 · 부속병원회계)

